

특별진찰의뢰 및 회신서

1. 재해자명		생년월일 (연령)	
2.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		소음작업 근무경력	
3. 신청상병		과거병력	

4. 특별진찰 의뢰

- * 아래 난청 측정방법에 따라 난청 장해원인, 장해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난청의 측정방법

- (1)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, 500헤르츠(a), 1,000헤르츠(b), 2,000헤르츠(c), 4,000헤르츠(d)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($a+2b+2c+d/6$)으로 판정함
 -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dB 이상이거나 0dB 이하이면 100dB 또는 0dB로 본다.
- (2)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자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하되, 검사결과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 실시함
 - (가)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
 - (나)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
 - (다) 순음청력도상 어음역(500, 1000, 2000Hz)에서의 주파수간역치변동이 20dB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이내일 것

가. 검사항목

- 기본 : 순음청력검사, 어음청력검사, 임피던스 청력검사,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
 - *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실시 불가시 구체적 사유 기재
- 보완 :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의심되거나 의학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성지속반응검사, 측두골전산화단층촬영 등 실시(다음 보완검사 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검사방법 포함)